

일본 후루사토 납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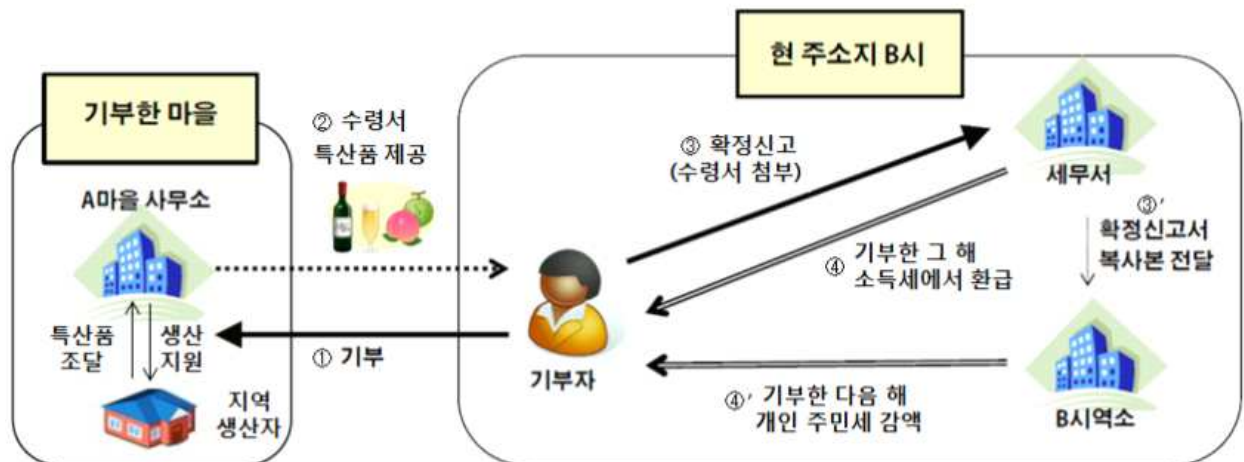
도쿄지사(4.3)

1 후루사토 납세 개요

□ 후루사토(고향) 납세이란

- 인구의 수도권 밀집 현상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 세금 감소 및 지방 경제 낙후로 지방간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지방과 직결하여 국민이 납세(기부)를 하도록 '08년에 제정된 제도
 - 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대해 기부(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기부금 중 2천엔이 넘는 부부에 대해서는 일정의 상한까지 원칙에 의해 소득세, 개인주민세에서 전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예) 연봉 700만엔의 급여소득자 (자식이 없는 부부의 경우)가 3만엔 기부하면 2천엔을 뺀 2만 8천엔이 공제됨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그 다음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또는 응원하고 싶은 자치제 등 어떠한 자치제에도 기부가 가능함
 - 대다수의 자치제는 기부자에게 답례로 해당지역 특산물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 * 기부자에게 꼭 답례를 해야한다는 조례는 없으며, 또한 특산물의 양 또는 품목, 증정횟수의 지정은 없고, 각 지역별 권한으로 시행 되고 있음

□ 후루사토 납세 구조 (원칙)



□ 후루사토 납세 도입 이후의 실적

(단위:명,천엔)

년도	기부자수	기부금액	공제액	평균기부금액
2009	33,149	7,259,958	1,891,669	219
2010	33,104	6,553,183	1,805,457	198
2011	33,458	6,708,590	2,043,318	201
2012	741,677	64,914,901	21,017,144	88
2013	106,446	13,011,278	4,526,323	122
2014	133,928	14,189,345	6,062,439	106

- '12년도는 동일본대지진에 인한 동북지방의 부흥을 위하여 기부자수 및 기부금액이 급증하였음
-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거의 없어진 '13년 이후도 제도가 시작된 년도에 비해 약 3배 규모로 확대하였으나 1명당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 경향에 있음

□ 세금 공제 개요

- 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대해 기부(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기부금 중 2천엔이 넘는 부부에 대해서는 일정의 상한까지 원칙에 의해 소득세, 개인주민세에서 전액을 공제
 - ① 소득세 : (기부금-2000엔)을 소득공제 (소득공제액×소득세율(0~40%*))이 경감
 - ② 개인주민세(기본분) : (기부금-2000엔)×10%를 세액공제
 - ③ 개인주민세(특례분) : (기부금-2000엔)×(100%-10%(기본분)-소득세율(0~40%*))
→ ①②에 의해 공제 되지 않은 기부금을 ③에 의해 전액 공제 (소득할액의 1할을 한도로 함) *'14년~'28년도에 대해서는 복흥특별소득세를 가산한 세율로 함

【공제에 관한 적용 이미지 (※1)】

기부금액 총 30,000엔

적용 하한가	【소득세】 소득공제에 의한 경감(※3) (3만엔-2천엔)×20%(※2) = 5,600엔	【개인주민세】 세금공제 (기본분)(※3) (3만엔-2천엔) ×10%=2,800엔	【개인주민세】 세금공제(특례분) *소득할액의 1할을 한도로함 (3만엔-2천엔)×(100%-10%-20%) = 19,600엔
2,000엔			

소득세와 합친 공제액 28,000엔

- ※1) 연수입이 700만엔의 급여소득자 (자식이 없는 부부의 경우, 소득세의 한계 세율은 20%)가 지방단체에 대하여 3만엔의 기부를 한 경우의 것
- ※2) 소득세의 한계세율이며, 연수에 의해 0~40%의 사이에서 변동 있음. 또한 '14년부터 '28년도까지에 대해서는 부흥특별소득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 ※3) 대상이 되는 기부금액은 소득세는 총소득액의 40%가 한도이며, 개인주민세(기본분)은 총소득금액의 30% 한도로 함

2 후루사토 납세 확충을 위한 제세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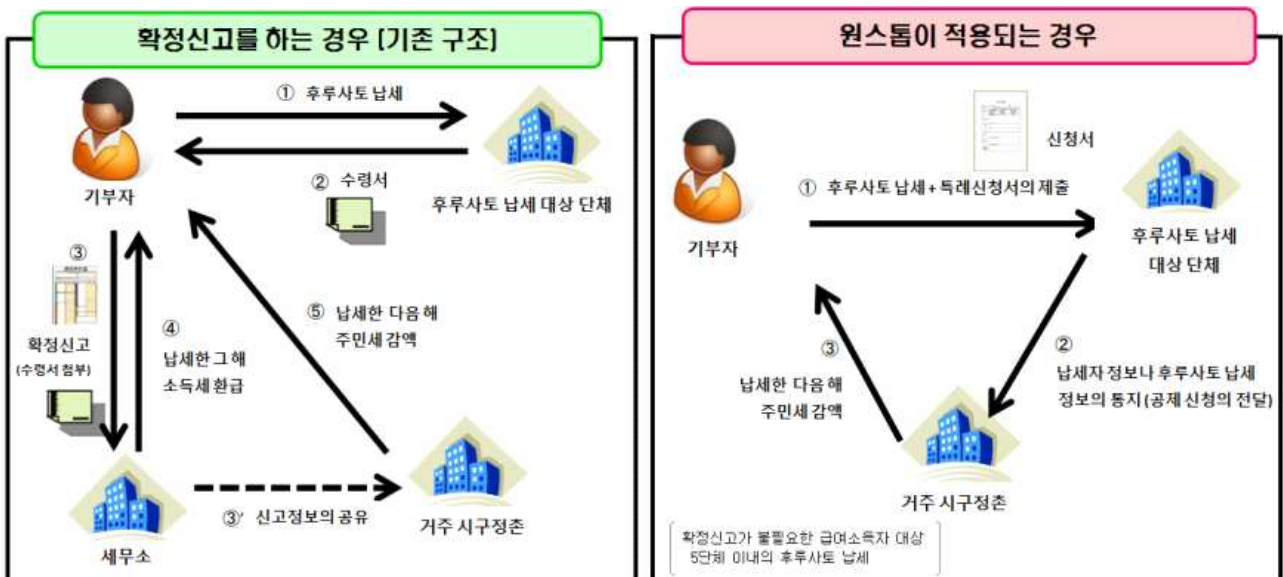
후루사토 납세의 촉진 및 지방 창출의 추진을 위해 '15년 제세 개정로 아래 내용이 시행된다.

□ 특례 공제액의 확충 ('16년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적용)

- 특례 공제액의 공제한도를 개인주민소득 할액의 2할 (현행 1할)에 올림

□ 신고처리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특례의 신설 ('15년4월 납세분 부터 진행)

-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확정 신고가 부담이 돼서 후루사토 납세를 주저하는 원인이 된 가능성이 있어, 후루사토 납세 대상이 5단체 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후루사토 납세 대상 단체에 신청만 하면 확정 신고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창설



3

지역 활성화 사례

□ 지역 특산품 산업의 활성화

-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산물을 받기 위한 기부, 또는 지역별 특산물 유치의 과잉 경쟁 현상 이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농수산물 산업과 지방기업의 어필이 가능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각 지역의 특산물 선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후루사토 납세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증정 특산물은 각각의 지역별로 그 차이가 있으며, 기부금을 수령한 계절에 맞춰 제철 농산물, 수산물을 보내는 케이스나 상품 송부를 분기에 1번, 반년에 1번 1년의 1번 등 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자치제도 있다.
- 대다수의 자치제는 기부 금액이 높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기부자들에게 본인 기부금에 맞는 지역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사이트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http://www.furusato-tax.jp/>)

□ 특산품 증정에 따른 지역 수혜

- 각 지역장의 특산품 PR은 한계가 있고 개인 취향으로 인해 편향될 우려가 있는 것에 반해 이 제도의 따른 특산물 증정은 그런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으며 PR효과는 더 크다.
- 각 지역 업체들은 그 지역의 이름을 걸고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품개발과 판매경쟁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씨의 후루사토납세 사례

급여수입: 600만엔
세대: 부부
배우자: 주부
직업: 셀러리맨



(2013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3개의 자치제에 기부)



* 기부자는 복수의 기부처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복수 기부한 지역으로부터 특산물 수령이 가능함

□ 지역 활성화 사례

지역	답례 특산품
나가노현 아난쵸 (長野県阿南町)	○ 1만엔 기부로 쌀 20kg 등 증정 - `14년도는 8월에 접수를 마감하는 정도 인기가 있었음 - 수지가 거의 상쇄돼도 쌀 만들기를 다시 시작하거나 휴경을 단념하는 농가가 나오는 등의 효과가 있었음 http://www.town.anan.nagano.jp/tyosei/cat7/000380.html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쵸 (北海道上士幌町)	○ `09년 후루사토 납세 실적이 약 30건 천만엔이었으나 `14년은 약 36,500건 6.5억으로 급증 - 카미시호로쵸의 일관된 생산방식으로 자란 보랜드 소고기의 인기가 높음 - 납세자에게 특산품을 보내는 것은 통신판매와 비슷하며, 재고 파악, 입금 확인 업체에 발송 의뢰 등 어느 정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IT 시스템도 필요하다 - 가미시호로쵸에서는 이 시스템 개발을 총무성에서 파견된 '지역부흥협력대'가 담당하여 시스템 구축된 점도 성공 이유의 하나임 http://www.kamishihoro.jp/sp/ftax
미야자키현 아야초 (宮崎県綾町)	○ 원래 미야자키현 아야초는 아야규(브랜드 소고기)로 인기가 많았으나 항공사와 협력 기획으로 10만엔이상 납세한 사람 대상으로 아야초 여행(1박2일, 항공비, 식사비, 숙박비, 렌타카포함)을 증정하고 있음 - 세수입을 얻으면서 관광 유치도 하고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음 http://www.furusato-tax.jp/feature/t14_10e.html

자료원: 총무성 <http://www.soumu.go.jp/>

후루사토 초이스 <http://www.furusato-tax.jp/>